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담당자	책임자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20 년 월 일

본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 신용보증의 부탁

-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합니다.

신용보증원금	금	원						
신용보증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② 제 1항의 신용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외에 법령 및 재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재단이 채권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부탁합니다.
③ 제 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라 함은 이 약정일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이후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2조 신용보증방법

- ① 재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 어음보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재단과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신용보증계약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③ 재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 또는 근보증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으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주채무가 분할상환되는 대출인 경우에 재단은 제 1조의 신용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보증료 등의 납부

- ① 본인은 재단이 제 1조 제 1항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납부하겠으며, 보증료율(최고 연율 2.0%)·계산방법·납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납부기일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연체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기한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④ 제 1항의 보증료 및 제 3항의 추가보증료는 본인의 기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재단이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의 보증료율에 따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⑤ 재단이 제 1항 내지 제4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기로 합니다.

제 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5조 사전구상

-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 2호 내지 제 4호, 제 6호 및 제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 ②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이 약정서 제 3조(보증료 등의 납부), 제 8조(담보·보험), 제 17조(자금용도 준수)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재단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유무에 불구하고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재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④ 재단이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기로 합니다.
 1.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변제에 사용
 2.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사전상환금을 제 4항 제 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재단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할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재단에 상환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조 채권보전조치

제 5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이 사전통지없이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7조 통지의무

- ① 본인은 주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채무의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재단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곧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재단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 8조 담보·보험

-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기로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 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담보에 대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재단이 정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재단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약정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보험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이의없기로 합니다.

제 9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등

- ① 재단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단은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신고한 최종주소와 공부상의 최종주소가 다른 경우 공부상의 최종주소)로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 ③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외에 이 약정의 각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 10조 상환범위

-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 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 3호와 제 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 8조 제 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③ 제 1항과 제 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1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별도의 연대보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한 경우 그 주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그 연대보증인은 재단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본인과 재단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잔존채무가 있는 동안에는 재단에 대해 변제함으로써 대위취득한 권리를 재단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며, 재단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재단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제 12조 대위담보권으로부터 변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재단은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대위권자로서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3조 변제 등의 총당순서

-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 또는 재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 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재단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총당대상 대위변제금이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4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 ①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재해 또는 운반도중의 사고 등 재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재단의 장부 및 전산매체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 또는 서명이 재단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며, 증서 또는 기타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 15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본인은 인감, 서명, 상호, 명칭, 대표자, 주소 및 기타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연대보증인은 인감, 서명,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재단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재단으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 16조 협조의무

- 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회보하며, 장부열람 등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본인의 요청 또는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재단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은 매 결산기마다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일 이후 3월이내 재단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17조 자금용도 준수 의무

본인은 재단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증신청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18조 특별관리

본인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재단의 권리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재단은 직원 등을 파견하여 본인의 재산 및 경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9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제 20조 신용보증기한 자동연장

제 1조의 신용보증기한까지 본 신용보증서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은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기한연장을 위한 별도의 조건변경신청서를 받지 않고 녹취방법을 활용하여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21조 특약사항

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 재단의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특수한 보증으로 일반 민법상의 보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재단의 보증채무이행의 범위,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재단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을 하는 날에 보증기한까지 보증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율 2.0%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보증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약정서의 보증기한은 개별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의 상환기일(변제기)을 의미하며, 근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를 확정하는 결산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보증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보증에서는 보증기한(주채무의 변제기)이 경과하면 주채무에 대한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근보증에서는 기한내 발생한 주채무가 확정되어 각 주채무의 변제기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 5조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절차없이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제비용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모든 연대보증인은 각각 재단에 대하여 본인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 5조의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본인에 우선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도 각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액을 나누어 변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개별보증의 경우 보증책임은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에 주채무가 이행되어 재단의 보증책임이 소멸될때까지 계속되며, 근보증의 경우 보증기한내에 발생한 주채무가 이행되어 재단의 보증책임이 소멸될때까지 계속됩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별도의 연대보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재단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손해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손해금율은 법령상의 최고 연율 25%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의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재단은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로부터 대위권자로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변제금액 또는 재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할 수 있습니다.

재단직원으로부터 약정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정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 상 호 : _____ 대 표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_____
연대보증인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_____
연대보증인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_____
연대보증인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_____
연대보증인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_____
연대보증인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_____
연대보증인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_____